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호 2000. 3. 8)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1. 검토경과

- 가. 2000. 3. 8 사천시장 제출
- 나. 2000. 3. 8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0. 3.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이유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연차별 정원감축 확정시기가 당초 매년 7월 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 시행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개정 시기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개정함(조례 제381호 부칙 제4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정원확정 시기를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원 개정시기를 6월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와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임.